

#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(안)

의안 번호	43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8. 1.

제출자 : 고성군수

## 1. 제안이유

### ○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4조

### ○ 사유

- '96. 5. 28 개정한 진주권행정협의회 명칭 부적정으로 자치단체 공통 특성을 살린 명칭으로 개정
- 민선자치시대 정착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확대 조정

## 2. 추진과정

### ○ 진삼연담권 행정협의회 구성 : '88. 11. 1(진주시, 진양군, 삼천포시, 사천군, 고성군)

### ○ 진주권행정협의회로 개정 : '96. 5. 28(진주시, 사천시, 고성군, 산청군)

※ 행정협의회 명칭 부적정으로 미시행

### ○ 행정협의회 정비에 따른 회의 개최

- 회의일시 : '96. 4. 3. 11:00
- 회의장소 : 진주시청
- 참석대상 : 진주시, 사천시, 고성군, 하동군, 산청군 기획실장(담당관)
- 내용 : 행정협의회 규약정비 협의(명칭변경 및 협의회구성 자치단체 확대 조정)

└ 명칭변경 : 진주권행정협의회 → 서부권행정협의회

└ 확대조정 : 진주, 사천, 고성, 산청(4개시군) → 진주, 사천, 고성, 하동, 산청(5개시군)

### 3. 주요골자

-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(안 제명 및 제2조)

- . 진주권행정협의회 → 서부권행정협의회

-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확대 조정(안 제3조)

- . 진주시, 사천시, 고성군, 산청군(4개시군) → 진주시, 사천시, 고성군, 하동군,  
산청군(5개시군)

- 불필요한 부분삭제 및 합리적 정비(현행규약제5조, 안제5조제1항, 안제10조제1항  
안제14조)

### 4. 심의의결요청(안) : 불임

## 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(안)

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'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'을 '서부권 행정협의회 규약'으로 한다.

제2조 중 '진주권 행정협의회'를 '서부권 행정협의회'로 한다.

제3조 중 '고성군수' 다음에 '하동군수'를 삽입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1항 중 '(전체회의를 밀함)'과 '(관련단체간 부분회의를 말함)'을 삭제한다.

제7조 내지 제10조를 제6조 내지 제9조로 한다.

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항 중 "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"를 "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계되는 단체만 운영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1조 내지 제13조로 한다.

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간사는 회장이 속하는 "기획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"를 "단체의 직원으로서 회장이 지명한다"로 한다.

제16조 내지 제17조를 제15조 내지 제16조로 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약은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규약의 폐지) 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은 이 규약시행일부터 폐지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종전 진주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거 협의한 것으로 본다.

#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<u>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</u> 제2조(명칭) 이 행정협의회는 <u>진주권행정협의회</u> (이하 '협의회'라 한다)라 칭한다. 제3조(구성) 행정협의회는 진주시장, 사천시장, 고성군수, <u>산청군수</u> 로 구성한다.	제명 <u>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</u> 제2조(명칭) 이 행정협의회는 <u>서부권행정협의회</u> (이하 '협의회'라 한다)라 한다. 제3조(구성) 행정협의회는 진주시장, 사천시장, 고성군수, <u>하동군수, 산청군수</u> 로 구성한다. <u>(삭 제)</u>
<u>제5조(회의참석)</u> ① 시장, 군수는 그 소속직원중에서 그 대리자를 선임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수 있다. ② 제1항에 의한 대리위원은 시장, 군수가 발급한 외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	제5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<u>정기회와 수시회로</u> 구분하고 - - - - 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<u>제6조(회의)</u>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( <u>전체회의를 말함</u> )와 수시회( <u>관련단체간부 회의를 말함</u> )로 구분하고 - - - - . ② ~ ③(생략)	제5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<u>정기회와 수시회로</u> 구분하고 - - - - 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<u>제7조 내지 제10조 생략</u>  <u>제11조(실무협의회)</u> ① -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수 있다. ②(생략)	제6조 내지 제9조(현행제7조 내지 제10조와 같음)  제10조(실무협의회) ① -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단체만 운영할수 있다. ② (현행과 같음)
<u>제12조 내지 제14조(생략)</u>  <u>제15조(간사)</u> 간사는 회장이 속하는 <u>기획 담당부서의 과장으로</u> 한다.	제11조 내지 제13조(현행과 같음)  제14조(간사) 간사는 회장이 속하는 <u>단체의 직원으로서 회장이 지명한다.</u>
<u>제16조 내지 제17조(생략)</u>	제15조 내지 제16조(현행과 같음)